

간행물관리번호

KYWA-2021-069-10

# 2021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란?

청소년활동 시 수반되는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항 상담 및 안전한 시설운영과 관련한 법률 해석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자(기관, 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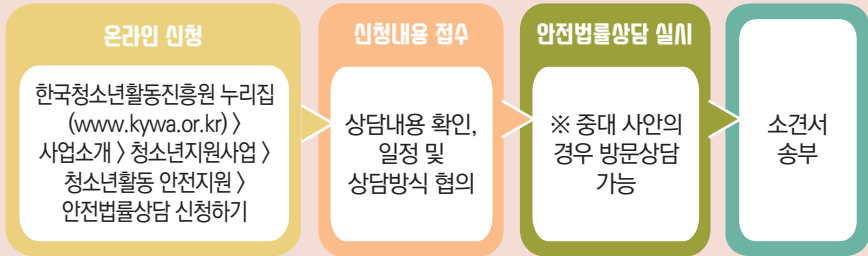
## ●●● 상담범위

상담범위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기타 안전 등 관련한 사항
청소년활동 운영사항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지도자, 활동시설 등)에 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등

## ●●● 신청대상

운영기관 관계자, 활동지도자, 참가자,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

## ●●● 상담절차 및 방식



## ●●● 상담내용

- ▶ 해당 사고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 신청 내용과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 대처방안 및 적절한 처리방법 안내 등

※ 본 사례집에 소개된 안전 법률 상담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CONTENTS

## 활동운영 관련

사례 0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의약품 수여 가능 여부	4
사례 02	활동 만족도 조사 운영 방법에 대한 차별 요소	7
사례 03	영상제작 시 무료폰트 활용 관련 저작권 침해 여부	9
사례 04	활동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12
사례 05	청소년활동 시 제공한 기념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배상책임 여부	15

## 기관운영 관련

사례 01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선임	18
사례 02	청소년수련시설과 특정 업체와 운영 위탁계약 및 종료 시 차용물 등의 처리	20
사례 03	행정처분 조치에 대한 절차 및 확인사항	22

## 지도자 관련

사례 01	숙박형 활동 지도에 따른 야간 근로 기준	25
-------	------------------------	----

## 안전사고 관련

사례 01	학교단체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28
-------	------------------------------	----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 법 준수사항 안내

● 초, 방향제, 탈취제 등 만들기 및 나눔 활동 관련 유의사항	30
● 화장비누, 향수 등 화장품 만들기 및 나눔 활동 관련 유의사항	33

### 1. 상담개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 청소년수련원 보건실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 중이며, 비치된 의약품 중 경구의약품은 보호자(혹은 인솔교사)의 동의를 받고 수련생에게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의약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음.

- 1) 현행 규정을 수련생에 대한 경구의약품 ‘수여’의 근거로 해석해도 되는지,
- 2) 의약품 ‘수여’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있는지

### 2. 관련법리



####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藥事)’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 규정 이하 조항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구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제20조제1항),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구 약사법 제44조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소견내용



#### 가. 약사, 한약사 자격이 아닌 자가 수련생에게 경구의약품을 ‘수여’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약사법상 판매 및 수여 행위는 약국 개설자(약사, 한약사 포함)만이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상의 ‘비치’가 ‘수여’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약사, 한약사 자격이 아닌 자가 비치된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어 불가할 것으로 보임.

#### 나. 수련생에 대한 의약품을 적법하게 ‘수여’하는 방안

현행법 하에서 적법하게 의약품을 ‘수여’할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약사, 한약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두어 의약품을 수여하는 방안
- 수련시설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 의약품을 수여하는 방안
- 수련시설 내 또는 근방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편의점 등)를 두는 방안
- 학교측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 양호실 보건 의사·약사를 동행하도록 하여 해당 보건 의사·약사를 통해 의약품을 수여하는 방안



### 1. 상담개요



시설 이용 후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휴대폰 없는 청소년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온라인(모바일) 만족도 조사 방식을 차별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2. 관련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3. 소견내용

LAW

차별금지에 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가 있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족도 조사 방식이나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등의 방법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안 역시 계속하여 발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포된 바는 없으며, 위 차별금지법률안이 규율하려는 분야도 고용,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형태, 성적체성, 학력, 종교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일 뿐, 온라인 접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 현재 컴퓨터(휴대폰) 소지자와 미소지자를 달리 취급하는 행위를 차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시설 이용 후 만족도조사 방식에 있어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휴대폰 미소지 청소년에게 차별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시설이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만족도 조사의 목적, 대상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 1. 상담개요



- 1) 영상제작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유튜브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만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폰트 저작권자 측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그 액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3)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영상제작업을 활용하여 영상 등을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2. 관련법리



####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PC의 폴더에 “.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지만, 글자의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소견내용

LAW

#### 영상제작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유튜브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에 따르면, PC의 폴더에 “.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지만, 글자의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따라서 영상제작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가 사용된 영상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

영상제작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기하여 영상물 제작에 활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영상제작업의 약관(이용계약)을 통해 폰트 파일의 사용범위를 개인·비영리 목적으로 한정하였거나 타 프로그램에서의 이용을 금지한 경우라면,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유튜브에 게재한 행위는 ‘약관(이용계약) 위반행위’로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저작권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액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안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음. 설령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5조의2, 제136조



및 제140조에서는 각각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범위를 벗어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또는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그렇다면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만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의 액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합의 금액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없으나, 해당 금액 수용 여부는 저작권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부담 가능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저작권자가 폰트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 방안

설령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급하게 합의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사료됨.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작권자측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권장하는 바임.

### 영상제작업을 활용하여 영상 등을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영상제작업에서 제공하는 유·무료의 폰트를 활용하여 영상 등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플의 약관을 통해 폰트 파일들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용된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유함.

## 1. 상담개요



과거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장 명의로 된 프로그램 참가 증빙서류(활동확인서 등)를 발급해주어도 법률상 문제 없는지, 보유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발급해주어도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

## 2. 관련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3. 소견내용

LAW

정보주체(참여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요청한 자료에 요청자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공할 때에는 그 제3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제재 또는 형벌에 처한다는 취지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유기간을 경과한 프로그램 참가 증빙서류(활동확인서 등)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 또는 형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음.



## 1. 상담개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 및 행사 후 제공한 기념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2. 관련법리



-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5. 22.]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소견내용

LAW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제조자나 유통업자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① 만일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념품의 생산 또는 판매과정에 관여하고, 이로써 제조된 기념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념품을 수령한 자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② 청소년수련시설이 제조자나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발생함.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한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활동 및 행사에서 제공한 기념품이 장기간 정상작동하다가 갑작스레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사고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과실( 및 고의)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기념품 제공시 활동 및 참여자로부터 ‘기념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받거나, 기념품 제공 시 “청소년수련시설은 본 기념품의 생산 또는 판매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바 제조물책임법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기념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안내하는 방안을 권유함.



### 1. 상담개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대표자 퇴사 후 후임자 선발 시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대표자가 공석이 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 2. 관련법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I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등록

#####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 1) 운영대표자(시설장) 기준 준수 확인

#####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함

#####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운영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III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자격확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상 운영대표자와 현 청소년수련시설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후 다를 경우 변경 시정명령 조치

## 3. 소견내용

LAW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선임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에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령에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 “운영대표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렇다면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는 운영대표자가 상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영대표자 퇴직 시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까지 행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1. 상담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이 특정 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 식당 운영 위탁 등), 운영 위탁계약 종료 후 수탁자가 사용물품을 즉시 반출하지 아니한다면 위탁자인 시설이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2. 관련법리



-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소견내용

LAW

수탁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위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위탁자가 제공한 물품과 ② 그 외 수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반입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함



### 가. 위탁자가 제공한 물품

우선 위탁자가 운영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물품에 대하여는 민법 제609조 이하의 사용대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도 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대주(위탁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계약 해지 후에 퇴거하면서 두고 간 물품 중에 위탁자가 제공한 무상사용 물품에 관하여는 위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임.

### 나. 그 외 수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반입한 물품

위탁자와 수탁자간 운영 위탁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만 대부분의 운영 위탁계약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임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1. 상담개요



소관 지자체 등에서 수련시설에 대하여 특정 시설이 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철거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안

2. 관련법리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3. 소견내용

LAW

#### 가. 지자체가 지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지자체 등이 지적하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어느 항목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리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에 관한 공문 발송을 요청하여 명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나. 지자체가 시정명령 내지 철거명령을 할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

지자체가 시설 설치기준의 부적합을 지적하며 시정을 명하거나,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철거한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여지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라 사료됨.

행정처분을 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사항을 준수하여야 처분의 적법성을 갖출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 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다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를 거쳐야 할 수도 있음. 또한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함이 원칙임(행정절차법 제24조). 해당 문서에는 처분의 이유, 근거 법률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가 어떠한 사항에 저촉되어 어떤 내용의 처분을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받게 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다. 향후 지자체 등의 시설상 조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지자체가 시정 내지 철거를 명하려면 지자체는 수련시설에 공문이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법률을 밝혀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두로 내지 모호한 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지자체에서 유선 내지 구두로만 조치를 요청하거나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때에는, (1)어떤 기준에 어떻게 맞지 않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뒤 (2)해당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며,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의 요구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불이익조치(철거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1. 상담개요



- 청소년지도사는 1박2일 이상 장기 캠프 프로그램 계획(안)을 기관장 결재를 받아 참여하게 됨. 장기 캠프 프로그램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는 22시 이후부터 안전대기를 하며, 실제로 야간 순찰 등 야간근로를 수행함.  
상기와 같은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박2일 이상의 장기 캠프 활동 시, 지도자가 야간 순찰 및 청소년 건강관리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노사합의 없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 관련법리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계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소견내용

LAW

가. 장기 캠프에 참여하여 야간 순찰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에게 야간 순찰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청소년지도사가 실시한 야간순찰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청소년지도사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캠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야간순찰 등을 수행한 것이므로, 야간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짐.

#### 나.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포괄임금 약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기관)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장기 캠프에 참여하여 야간 순찰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에 산입되는지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사가 실시한 야간순찰 등이 실질적으로 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청소년지도사의 야간근로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이를 나머지 근로시간과 합산하였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캠프 활동은 주 52시간 초과가 인정되는 예외사유로서의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라. 사용자가 노사합의 없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휴가제에 관한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야간근로의 경우 이러한 보상휴가는 임금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를 감안하여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당에 같음하여 휴가로 보상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함.

만일 보상휴가제에 대한 노사 간 서면합의가 없고 포괄임금 약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관은 야간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포괄임금 약정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야간근로에 대해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급여 총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상담개요



학교 단체가 수련시설로 수학여행을 와서 활동하던 중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가 가입한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련시설이 가입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관련법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 3. 소견내용

LAW

우선, 학교가 가입한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련시설이 가입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학교와 수련시설 중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수련시설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청소년활동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으로 보임.



### 1) 학생이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수련원의 시설 제공을 비롯하여 수련원 책임의 교육과정 편성, 수련원 책임의 교육실시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수련시설 책임하에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중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고는 수련시설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수련시설이 가입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 2) 학생이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련시설이 시설만 제공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가 주관하고 교사의 관리·감독 범위내의 집회, 수련, 훈련 등의 활동중에 발생한 학생안전사고는 학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가 가입한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3)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의 운영 주체 및 책임을 불문하고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는 수련시설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수련시설이 가입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학교와 수련시설 사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련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종류 및 보험급여 범위 등에 따라 수련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주체를 이와는 달리 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학교가 가입한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련시설이 가입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수련시설 사이에서 체결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계약서에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을 권유함.

## 01 초, 방향제, 탈취제 등 만들기 및 나눔 활동 관련 유의사항

-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화학제품안전법상 확인받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은 법 저촉사항이므로 주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운영 가능함(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 내용 검색)



### 관련 법률

#### \*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정의) 중 발취

-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함.
-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함.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함.

####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참고**

**1.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아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3항)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2. 미준수 시 불이익(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8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표적인 경우
- (1)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함에도 적합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함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표적인 경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뒤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02 화장비누, 향수 등 화장품 만들기 및 나눔 활동 관련 유의사항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화장품법상 미등록된 시설에 의하여化妆품을 제조하여 나누어주는 활동은 법 저촉사항이므로 주의
- 자세한 안내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지내용 확인 요망 (특히 ‘화장품전환 물품관련 질의응답집’ 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 > 식약처 소개 > 지방식약처소개 > 서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 > 검색창에 ‘화장품’으로 검색 >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 게시물 확인



### 관련 법률

#### \*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중

화장비누 등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함(등록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에 의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 법 준수사항 안내]

\* 화장품 유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3)

분류	품목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3)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4) 외음부 세정제 5)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 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2) 아이 라인너(eye liner) 3) 아이 섀도(eye shadow) 4) 마스카라(mascara)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6)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분말향 3) 향낭(香囊) 4) 콜롱(cologne)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hair tints)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3) 염도제 4) 탈염·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6) 립스틱, 립라인너(lip liner)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2) 헤어 토닉(hair tonics) 3)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4) 헤어 크림·로션 5) 헤어 오일 6) 포마드(pomade) 7)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8) 샴푸, 린스



분류	품목
	9) 퍼머넨트 웨이브(permanent wave) 10)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11) 흑채 12)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3) 탑코트(topcoats)
손발톱용 제품류	4)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2) 남성용 툴کم(talcum) 3)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4)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5) 셰이빙 폼(shaving foam)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란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체모제 2) 체모왁스 3)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참고

- 누구든지 화장품비누를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한 화장품비누를 유통·판매(무상 증여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방과후 학교’ 등에서 청소년이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거나 가정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되어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대상이 됨  
화장품 제조법을 교육만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지는 않는다면 화장품법에 따른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대상이 아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

## 2021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

---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행일** 2021년 12월

**디자인·인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Tel 02-2265-4600)

---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사례집에 소개된 안전법률 상담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  
니다.

---